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9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최기상・이기헌・박상혁

김한규 • 백승아 • 정성호

허종식 · 조승래 · 김성환

김우영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 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3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이나"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 로 한다.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	2
공연하게 <u>사실이나</u> 거짓의 사	사생활의 비밀을 침
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u>해하는 사실이나</u>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u>사실</u> 을 드러내어	<u>사생활의 비밀을</u>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u>침해하는 사실</u>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u>제1항과 제2항</u> 의 죄는 피해	<u>④</u> 제2항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